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6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상 위법에 규정되어 있고, 환경부의 「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과 환경부의 「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」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, 내용은 크게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폐지안의 주요 이유로
 -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
 -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는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 환경부의 「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」이 폐지됨.
- 따라서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의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,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최근 5년간 이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조례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7.1.19. ~ 2.8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
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